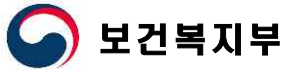


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주요 변경 제도 사항 -



- 1. 임신부,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(중요) 1
- 2.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(중요) 3
- 3.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(중요) 5
- 4.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, 명단 공포 제도 도입(중요) 7
- 5.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11
- 6.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13
- 7. 희망키움통장II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15
- 8.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17
- 9.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19
- 10.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21
- 11. 고위험 임신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 확대 23
- 12.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(중요) 26

1. 임신부,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(중요)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☎ 044-202-2745)

- 임신부,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-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%p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집니다.
 - * 상급종합 60→40%, 종합병원 50→30%, 병원 40→20%, 의원 30→10%
 - **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44만원→24만원
-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입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- 조산아 및 저체중아(제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)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% 적용하여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할 예정입니다.
 - * 종별 의료기관 본인부담률의 70% →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%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1 임신기간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	○ 상급종합 : 60% ○ 종합병원 : 50% ○ 병원 : 40% ○ 의원 : 30%	○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20%p씩 인하 - 상급종합병원 : 40%, 종합병원 : 30%, 병원 : 20%, 의원 : 10% 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('17. 1월)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44-202-2746)
2 다태아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	○ 70만원 지원	○ 90만원 지원으로 확대 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('17. 1월)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44-202-2746)
3 조산아 외래본인부담률 인하	○ 성인 본인부담의 70% 적용	○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% 적용 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('17. 1월)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44-202-2743)

<201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>

- 추진배경 : 임신부,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% 인하
 - ②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(70만원→90만원)
 - ③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10%로 인하
- 시행일 : 2017.1.1.일 시행예정

2.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(중요)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☎ 044-202-2731)

- **질병악화 예방, 생명유지** 등을 위해 **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,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*** 등을 건강보험에서 **급여지원을 확대**할 계획입니다.
 - *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,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
-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**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**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.
 - * 휴대용 산소발생기 20만원/월, 기침유발기 16만원/월
-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*에 대한 **요양비 지급 대상자**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**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**할 예정입니다.
 - * 자가도뇨카테터 : 척수 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
 - ** 선경인성 방광환자 소모품 지원 비용 : 1일 기준 9,000원(최대 6개)
- **자동복막투석*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**하여 환자의 **비용부담을 경감**하고 **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**할 예정입니다.
 - * 자동복막투석 :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으로, 주로 수면시간에 기계가 투석액 교환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방법
 - ** 기준액(일) : (현행) 5,640원 → (변경) 10,420원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㉔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(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)	○ 비급여	○ (대여료 신설) 20만원(휴대용 산소발생기, 16만원(기침유발기) 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임산부, 조산아 외래 본인 부담률 대폭 인하	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, 고시('17. 1월)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44-202-2731)
㉕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(자가도뇨카테터)	○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	○ (대상자 확대) 선천성·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임산부, 조산아 외래 본인 부담률 대폭 인하	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, 고시('17. 1월)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44-202-2731)
㉖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(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)	○ 5,640원/일	○ (기준액 인상) 5,640원/일 → 10,420원/일 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임산부, 조산아 외래 본인 부담률 대폭 인하	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, 고시('17. 1월)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44-202-2731)

<2017년도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>

- 추진배경 :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
- 주요내용
 - ①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 지원
 - ②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 확대 지원
 - ③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(5,640원/일 → 10,420원/일)
- 시행일 : 2017년 1월 1일

3.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(중요)
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(☎ 044-202-3052)

- '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**인상**되어, '17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-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'16년 439만원에서 '17년 447만원으로 1.7% 인상되었습니다.
 - 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%에서 30%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.
 - 이에 따라 '17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**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**('16년 127만원 대비 5.2% 인상)하며
 - **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'17년도부터는 134만원으로 인상**되어, '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**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**됩니다.

☞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>보도자료>기초수급자, '17년 생계급여 '16년 대비 5.2% 인상

<'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>

- 추진배경 :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
- 주요내용
 - ① '17년 기준 중위소득 : '16년 대비 1.7% 인상
 - 4인가구 기준 ('16)약 439만원 → ('17)약 447만원
 -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의 ('16)29% → ('17)30%로 확대
 - 4인가구 기준 (16)약 127만원 → ('17)약 134만원
- 시행일 : 2017년 1월 1일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㉑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	○ 127만원 ('16년, 4인가구)	○ 134만원('17년, 4인가구)으로 확대 ☞(참고)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>보도자료>기초수급자, '17년 생계급여 '16년 대비 5.2% 인상	국민기초생활보장법 ('15. 7월 개정·시행)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(044-202-3052)

4.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, 명단공표 등

「노인복지법」 개정 시행(중요)

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(☎ 044-202-3452)

- '16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「노인복지법」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**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,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, 노인학대시설의 명단 공표제도를 도입**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날** 예정입니다.
 - 현재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는 신고할 수 있고,
 - 특별히, 의료인·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**8개 직군***은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 - *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(노인복지시설/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/ 사회복지관/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/ 장기요양 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/ 건강가정지원센터), 의료인, 노인복지상담원,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의 상담·치료·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119구급대의 구급대원
 - '16년 12월 30일부터는 **의료기관의 장 등 6개 직군***도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* 의료기관의 장,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, 응급구조사, 의료기사
- '16년 12월 30일부터 **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의 확정·집행 종료·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(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자)**은 노인관련기관*에 **취업이 제한**됩니다.

- * **노인관련기관(법 제39조의17)**: 노인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, 재가장기요양기관, 긴급전화센터,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, 건강가정지원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성폭력피해상담소,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, 의료기관, 장애인복지시설,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센터
- 따라서, **행정기관**은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 및 인·허가 등을 신청 받은 경우 **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조회**해야 합니다.
- 또한, **노인관련기관을 운영**자는 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**취업 및 노무제공 대상자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확인**하여야 합니다.
- '16년 12월 30일부터 **관할행정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폐쇄**를, **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임**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 및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**관할 행정기관은 해당 시설을 직접 폐쇄**하거나 **인·허가 등을 취소**할 수 있습니다.
 - 이는 **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**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'16년 12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**노인에 대한 금지행위*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, 위반행위, 처벌내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**할 수 있습니다.
 - * 법 제39조의9(금지행위): 신체적 학대, 성적 학대, 유기 및 방임, 경제적 학대,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는 행위

- 또한, **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**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**명단과 범 위반 이력**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.

- '16년 12월 30일부터 도입되는 **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, 노인학대범죄 전력자의 노인관련시설 취업 제한, 노인학대가 일어난 법인과 시설의 명칭 공표,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제도의 도입**이 앞으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.

< '16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「노인복지법」 주요 내용 >

- 추진배경** :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전 국민 노인학대 인식 개선
- 주요내용**
 - ①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확정된 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
 - ②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 받은 법인 등 운영시설에 대한 명칭 공표,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
 - ③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(8개→14개 직군)
- 시행일** : 2016년 12월 30일

구분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	○ 8개 직군 (의료인, 노인복지시설 장과 종사자, 노인복지상담원, 장애인복지시설 상담·치료·훈련 또는 요양업무 수행자,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장 등)	○ 14개 직군 (추가직군)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기관의 장 /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/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/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/ 응급구조사 / 의료기사 ※(참고) 노인복지법 제39조의6	노인복지법 ('16. 12.30)
			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(044-202-3452)
Ⅱ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	-	○ (신설) -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불가 -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-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※(참고)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	노인복지법 ('16. 12.30)
			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(044-202-3452)
Ⅲ 위반사실 공표	-	○(신설) - 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노인학대 금지행위(법 제39조의9)로 처벌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공표 ※(참고)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	노인복지법 ('16. 12.30)
			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(044-202-3452)

5.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

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(☎ 044-202-2515)

- 내년에는 55-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.
 - 이번 시범사업은 <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>의 주요 과제인 폐암검진의 검진 절차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
 - 2017년에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,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,
 - *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것으로 피폭량이 약 10분의 1 수준
 -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검진 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.
 -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.

<폐암검진 시범사업>

- 주요내용
 - ① 55-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해 실시
 - ②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,000명에 대해 시범 시행
 - ③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실시
- 시행일 : 2017년 3월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폐암검진 시범사업	○ 없음	○ 55-74세의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 수행 *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55-74세 고위험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도입	암관리법 ('17. 3월)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(044-202-2515)

6.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

- 맞춤형복지차량 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 증액 -

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(☎ 044-202-3122, 3124)

- 「읍면동 복지허브화」를 추진하는 2,100개 읍면동에 '맞춤형 복지차량'을 지원하고,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할 계획입니다.
 - 읍면동 주민센터의 '찾아가는 서비스'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'17년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,100개 읍면동 전체에 '맞춤형 복지 차량'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'맞춤형 복지 차량' 지원으로 찾아가는 상담이 더욱 활성화되고, 특히 관할지역이 넓은 읍면의 복지 공무원의 이동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.
 -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복지자원 연계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할 계획입니다.
 - 읍면동당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84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.

<읍면동 복지허브화 주요내용>

- 추진배경 :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복지제도 제고
- 주요내용
 -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"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" 중심(Hub)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기능 강화
 - '맞춤형 복지팀'을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, 찾아가는 상담,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
 - ② ('16) 933개→('17) 2,100개→('18) 3,502개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1.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 인상	○ 읍면동당 연간 600만원 지원	○ 읍면동당 연간 840만원	해당없음
2.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 확대	○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 33개소 지원	○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2,100개소 지원	

7.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

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(☎ 044-202-3072)

-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기준 및 가입 기간 중 소득 유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.
 -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·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중 일정소득* 이상 가구만 가입 할 수 있었고
 - * 기준 중위소득50%(179만원, '16년 3인가구 기준)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
 - ** 기준 중위소득 50%의60%(107만원, '16년 3인가구 기준)
 - 가입 기간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를 초과하면,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으나,
 - 앞으로는 가입일 현재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에 해당하면,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
 - 또한, 가입 기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%까지 증가한 가구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<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 기준 완화 주요내용>

- 추진배경 : 희망키움통장Ⅱ* 가입 대상 확대 및 중도 해지 기준 완화로 근로 빈곤층의 중산층으로의 진입 지원 강화
 - * 가입 가구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1:1 추가 매칭 지원하여 3년 후 720만원 + 이자 수령
- 주요내용
 - ① 통장 가입 가구 소득 기준
 - 기준중위소득 50%의 60%이상~기준중위소득 50%이하 → 기준중위소득 50%이하
 - ② 통장 가입 기간 중 유지하여야하는 소득 기준
 - (소득상한) 기준 중위소득의 60% → 기준 중위소득의 70%
- 시행일 : 2016년 10월

양식 2 「신·구 대비표」 예시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Ⅱ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	○ 가입기준 -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50%의 60%이상, 50%이하 가구만 가입	○ 소득하한 기준 삭제 - 기준 중위소득의 50%의60% 미만 가구도 가입	변경 지침 시달 ('16.10월)
	○ 유지기준 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% 초과하면 중도 해지	○ 소득상한 기준 상향 - 통장 가입 기간 중 가구소득이 증가로 중도 해지되는 소득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70%까지로 상향	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(044-202-3072)

8.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

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(☎ 044-202-3073)

- 차상위자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과 근로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.
 - 지금까지는 2000cc 미만 승용차의 소득 환산 시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, ② 질병·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, ③ 차령 10년 이상의 경우에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(월 4.17%)을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100%를 적용하여,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.
 - 2017년에는 배기량 2000CC, 현재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(월 4.17%)을 적용함으로써 차상위 계층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희망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.

<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>

- 추진배경 :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을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
- 주요내용
 - ① 차상위 자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을 완화
 - 적용 대상 :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중 소득환산율 4.17% 적용 차량
 - (기존) 생업에의 사용,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, 차령 10년 이상 → (변경) 기준 3가지 경우 외 2000cc미만 중 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추가
 - ② 적용대상 사업: 자활근로 사업 및 희망키움통장(Ⅱ) 지원 사업
- 시행일 : 2017년 1월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	○ 자동차 소득 환산율 원칙: 월 100% ※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월 4.17% 1.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. 질병·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. 차령 10년 이상	○ 자동차 소득환산율 원칙: 월 100% ※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월 4.17% 1.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. 질병·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. 차령 10년 이상 4.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	변경 지침 시달 ('17.1월)
			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(044-202-3073)

9.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

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(☎ 044-202-3302)

- 지속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,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.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신설*로,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(17.1.1. 시행)하여, 중앙권익옹호기관(1개소) 및 시·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.
 - *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·보호·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...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... 둔다.
-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장애인학대 실태조사, 전문인력 양성,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,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

<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계획>

- 추진배경 :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종합 지원
- 주요내용
 -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 및 지역(시·도별 17개소) 설치
 - 중앙옹호기관 : 장애인학대 실태조사,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
 - 지역옹호기관 : 장애인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, 응급보호, 사후관리 등
- 시행일 : 2017년 1월 1일
 - * 지역옹호기관은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개소일은 조정될 수 있음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II 장애인권익 옹 호 기 관 설 치	<기준> ○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 (1개소)만 운영	<신설> ○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(1개소) 및 지역(17개소) 설치	장애인복지법 (17. 1월)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(044-202- 3302)

10.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

- 전국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, 행동발달증진센터(2개) 본격 운영 -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(☎ 044-202-3347)

- 인지·의사소통 영역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(지적 장애인, 자폐성장아인, 210천명)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.
-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복지, 고용, 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 하여 제공합니다.
- 또한,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, 공공 후견인지원,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.
- 이와 함께,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'행동발달증진센터' 2개소를 각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 운영합니다.

☞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 1)발달장애인 복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출범, 2) 발달장애인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쉬워진다

<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>

- 추진배경 : 발달장애인 복지 등 지원 및 권리 보호
- 주요내용
 - ① 광역지자체 단위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
 - 복지, 고용, 교육 등 서비스 맞춤형 제공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
 - 범죄 피해시 현장조사, 보호조치, 공공후견인 지원
 - ②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을 통한 자해, 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 지원
- 시행일 : 2017년 1월 1일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II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	- 신규 운영	○ 광역지자체 단위 17개 기관 운영 ○ 맞춤형 복지, 권리보호 서비스 제공 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 보도자료>발달장애인 복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출범	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15.11월)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(02-2023- 3347)
II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	- 신규 운영	○ 양산부산대병원, 한양대병원내 운영 ○ 자해, 타해 등 행동문제 전문 치료 지원 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 보도자료>발달장애인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쉬워진다	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15.11월)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(02-2023- 3347)

11.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및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 대폭 확대

- 고위험임산부 : 비급여진료비 50만원이하도 지원 -
 - 기저귀 : 생후 12개월 미만 → 생후 24개월 미만 -
 - 조제분유 : 시설아동, 부자·조손가정 아동 추가 -
-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(☎ 044-202-3391)

- 그동안 산모의 질병·사망 등 의학적 사유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였으나, 산모가 실제 양육하지 않아 모유 수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

* (추가 지원대상) 아동복지시설·가정위탁 및 부자·조손가정 아동

○ 또한, 복지부는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편의 증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신청제도(17.1월~) 및 바우처 잔여포인트 문자알림 서비스(17.1월~)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.

□ 고위험 임신부*에 대한 지원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%(300만원 한도)를 지원하였으나, '17년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합니다.

* (지원대상 질환) 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

○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일상적인 임신·출산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외에도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진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
○ 이와 같은 지원확대를 통해 3대 고위험임산부 중 26.1%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기간이 2배로 연장(16년 : 생후 0~12개월 → '17년 : 생후 0~24개월)됩니다.

○ 영유아 기저귀 사용 평균 기간(월령)은 만 2세(36개월)까지인데 반해 지원기간이 12개월까지여서 그 동안 지원 단절이 있었습니다.

- 지원기간 연장으로 대부분의 영유아가 기저귀 이용 기간동안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'15년 출생 영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분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·가정위탁 및 부자·조손가정 아동도 추가됩니다.

□ 3대 고위험 임신부 비급여 진료비 분포

비급여 진료비	50만원 이하	~100만원 이하	~200만원 이하	~300만원 이하	300만원 초과
분포비율(%)	26.1	35.1	26.0	9.0	3.8

*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및 평가 연구('16.7)

□ (조제분유) 아동복지시설 및 부자·조손가정 양육 아동 규모

구분	만 1세 미만 아동 규모
아동복지시설·가정위탁	약 1,000여명
한부모가족(부자·조손)	약 100여명

구분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	○ 지원금 산출방법 -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 치료비 비급여 본인 부담 금액에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%는 예산 지원하고, 10%는 개인 부담 적용	○ 지원금 산출방법 -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%는 예산 지원하고, 10%는 개인 부담 적용	변경 지침 시달 (17.1월)
			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(044-202-3391)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 사업	○ 지원대상 - (기저귀)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- (조제분유)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· 산모의 질병·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·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)가정인 경우	○ 지원대상 - (기저귀)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- (조제분유)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· 산모의 질병·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·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)가정인 경우	변경 지침 시달 (17.1월)
			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(044-202-3391)

12.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(중요)

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(☎ 044-202-3672)
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(☎ 044-202-3321)

□ '17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올해 보다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.

○ '16년 단독가구 100만원, 부부가구 160만원이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,

- '17년 1월 1일부터 단독가구 119만원, 부부가구 190.4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
○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.

※ 「선정기준액」 :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
※ 「소득인정액」 :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산식에 따라 합산한 금액으로, 근로소득 공제(최대 월 60만원), 재산공제(최대 월 24~45만원), 금융재산 공제(최대 월 6.6만원) 등을 차감하여 산정

□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'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인상됩니다.

○ '16년 단독가구 월 100만원, 부부가구 160만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'17년 단독가구 월 119만원, 부부가구 월 190.4만원으로 상향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기초연금 대상사 선정기준 상황 조정	○(단독) 100만원 (부부) 160만원	○ (단독가구) 119만원, (부부가구) 190.4만원	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('17. 1월)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(044-202-3672)
㉡ 장애인연금 대상사 선정기준 상황 조정	○(단독) 100만원 (부부) 160만원	○ (단독가구) 119만원, (부부가구) 190.4만원	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('17. 1월)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(044-202-3321)